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
----------	----

제출년월일 : 2003.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및 고엽제휴우의증환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및 고엽제휴우의증환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 추가(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별첨

나. 입 법 예 고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예 산 조 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관계부처 승인 : 강원도(세회13400-1637 / 2003.6.25)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바. 기 타 : 강원도 허가안 통보 공문 사본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방침 사본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다음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을 삽입하고, 동조 동항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전화 033)249-2881 /전송 033)249-4081
 세무회계과 과장 : 구 영 모 담당 : 김 완 수 담당자 김 태 영

문서번호 세회 13400-1637

시행일자 2003.06.25 (1년)

공개여부 (비공개)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선 결	재무과 장	김완수	지 시	
접 수	일자	2003.06.25	결 재 · 공 람	
	시간	16:07:57		
	번호	2896		
처 리 과	재무과		정수담당	유용근
담 당 자	김완수		부과담당	김태영
심 사 자			심사일	

제 목 시·군세감면조례 개정 허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89(2003.5.7)호 및 지방세제담당관 -360(2003.6.18)호와 관련입니다.

2. 광주민주화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는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의회 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 개정·시행하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군세감면조례개정 허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강원도(강원도 춘천시 자치행정국 세무과) 강원도(강원도 강릉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강원도

"이제는 2010동계올림픽, 강원도 평창에서"

문서번호	재무13400--2413
보존기간	30 년
결재일자	
공개여부	공개

기안	과장	부군수	군수
정위신	김삼국 휴가	대결	백경동
협조	부과담당		

平昌郡稅減免條例 改正方針

평 창 군
(재 무 과)

평창군세감면조례 개정방침

- 현행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된 표준안에 따라
-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I. 허가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 자동차세 감면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 ~ 7급 -자동차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적용 대상 확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 ~ 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II. 개정검토

1.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의견 : 개정 필요

-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법률 제6919호 2003.5.2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법률 제6650호 2002.1.26)

○신규 감면대상자 현황 : 총 61명(2003. 6월 현재)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관내 대상자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1명(국가유공자와 병합될 수 있음)

● 참고 자료 ●

-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현황 : 46대(2003년 1기분 기준)
 - 46대(승용 36대, 승합 4대, 화물 6대)
 - 세액 6,284,210원(교육세 1,355,600원 포함)

- 고엽제 환자 61명에 대한 세수추계 불가
 - 고엽제 환자의 특수성으로 명단 유출이 금지됨

Ⅲ.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군의회 상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 7. 31. ~ 8. 2.
 - 의회상정 : 2003. 8월초(예정)
- 개정자료 : 별첨(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동항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세감면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동일)</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 국가유공자 등의-----국가유공자 등의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과-----</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